

#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등급 결정

지방공무원법 76조(근무성적의 평정)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(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) 및 제21조의5(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)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·의결함

## 1. 평가대상자 현황

연번	성명	성별	생년월일	분야	계약기간	신규임용	비고 (최초임용)
1	송지현	여	87.02.07	구강보건	2014.02.14~ 2015.02.13	2014.02.14	2014.02.14

## 2. 평가등급별 결정

연번	직급	성명	성별	본인 평가	직근업무 감독자가 평	근무실적 평가위원회 평가	최종 평점	평정 등급	비고
1	시간선택제 임기제 (마급)	송지현	여	100	100	100	100	A	

**첨 부 : 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 각 1부.**

##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 연장 등

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(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), 제21조의5(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),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(예규제109호)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함

### 1. 계약내용

직 급	성 명	생년월일	최초임용일	계약기간		비고
시간선택제임 가제마급	송지현	87.02.07	2014.02.14	당초	2014.02.14.~2014.02.13	2년연장
				연장	2015.02.14.~2017.02.13	

### 2. 평가기준 (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)

가)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방법

『100점 만점의 달성도×해당단위목표의 가중치×업무비중+가감점』

나) 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 및 평가결과

S등급 (탁월)	A등급 (우수)	B등급 (보통)	C등급 (미흡)	D등급 (부진)
110점이상	100~110점미만	96~100점미만	90~96점미만	90점미만
기준이상의 봉급인상 및 계약 연장	계약2년 연장	계약1년 연장	봉급삭감	계약해지

### 3. 실적평가점수 산출

성과단위목표	가중치	업무비중	달성도	목표별점수	가감점	계
A) 환자접수 및 진료 보조	1.5	25%	100%	25	0	
B) 구강보건교육	0.9	20%	100%	20	0	
C) 불소도포	1.5	25%	100%	25	0	
D) 저소득 아동치과주요사업	0.8	20%	100%	20	0	
E) 기타 구강보건관련 업무 등	0.3	10%	100%	10	0	
계				100	0	100

#### 4. 2014년도 근무실적 평가

직 급	성 명	평 가 내 용	평가결과	
			점수	등급
시간선택제임기제 '마'급	송지현	환자접수 및 진료보조업무, 구강보건교육, 불소도포,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및 기타 구강보건관련 업무 등 평가	100	A

#### 5. 평가결과 (계약기간 연장. 변경. 해지)

직 급	성 명	결 정 사 항	비 고
시간선택제임기제'마'급	송지현	계약기간 2년 연장	